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관 련 3666
--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6. 6. 12.
제 안 자 : 주택공간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 설치여부의 유연성을 도모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제21조제1항 중 “둔다”라는 표현을 “둘 수 있다”로 수정함.(제21조제1항).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둔다”를 “둘 수 있다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1조(도시재정비위원회 설치·운영 등) ① 법 제34조에 따른 심의·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21조(도시재정비위원회 설치·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	제21조(도시재정비위원회 설치·운영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둘 수</u>
② ~ ⑪ (생략)	② ~ ⑪ (현행과 같음)	② ~ ⑪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5조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조례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공동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	⑫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둔다”를 “둘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5조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조례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공동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· 운영 등) ① 법 제34조에 따 른 심의·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<u>둔다</u> .	제21조(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· 운영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둘 수</u> <u>있다</u> .
② ~ ⑪ (생략) <u><신설></u>	② ~ ⑪ (현행과 같음) <u>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</u> <u>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</u> <u>제55조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</u> <u>회 또는 같은 조례 제63조제1항</u> <u>에 따른 시공동위원회에서 위원</u> <u>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</u> <u>다</u> .